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611
----------	------

제출일자 : 2024. 10. 27.

제출자 : 달성군



## 1. 제안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호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붙임)

(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24. 10. 4. ~ 10. 24.)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 2024. 3. 5.)

제3조의2(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조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이하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이하 “사이버보안 업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2.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3.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보안대책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